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0. 5. 27.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4월 1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0년 5월 2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 가.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9. 2. 8)과 동법시행령('98. 12. 31) 및 동법시행규칙('99. 2. 22), 환경부예규 제189호 개정('99. 8. 9)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수정·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 관련사항(제6조의2<별표1>) 개정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수정·보완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유제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용기 사용 억제하기 위하여 '99년 2월 8일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1회용품 용기제조 및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업소의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영세업자에 대하여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처음 적발시 경고조치하되 사용자제 조치명령 후 1차 적발시부터 2, 3차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형백화점 또는 대형매장, 도매센터 등은 물론 영세업자(33㎡)까지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법 제40조에 의거 부과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별표 제1호의 가의 3을 신설하여 적은 면적을 갖고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1회용품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작하여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두 번째, 별표 다와 마의 내용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의 마와 마의2 그리고 바, 사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의 내용중 부과금액을 1차에 한하여 종전에 300만원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경감하며, 마의 2-3을 삭제하고 마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1)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등에서의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상향조정하여 1차 적발시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과 (3)의 매장면적이 1,000㎡ 이하 165㎡ 이상인 업자가 무상으로 1회용품 용기를 제공하거나 합성수지의 재질로 된 1회용품 광고선전 제작 또는 배포를 한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고 (4) 그리고 매장면적이 33㎡에서 165㎡ 이하의 판매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하 30만원을 부과하며, (5)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을 위반한 경우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의 내용을 개정하여 식품제조업자나 가공업자가 위반한 경우 200만원을 즉석 판매 제조, 가공한 자가 위반한 경우는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 개정안이며, 아의 내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이나 종합소매업을 하는 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용기를 광고선전물 제작이나 배포억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에 200만원 2, 3차에 300만원씩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내용중 2는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2의 가, 나를 삭제한 것은 법 시행령 제14조(폐기물배출자의 범위) 제1항 1호와 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영세한 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대형업자에 대하여는 가중하게 부과하므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9
----------	-----

제출년월일 : 2000. 4. 1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99. 2. 8), 동법시행령('98. 12. 31), 동법시행규칙('99. 2. 22), 환경부예규 제189호('99. 8. 9)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수정·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과태료 부과 관련사항(제6조의2<별표1>) 개정

-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수정·보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 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비 고
	1차	2차	3차 (이후)	
1.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품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1,000	3,000	
다.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마.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비 고
	1차	2차	3차 (이후)	
(2)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2,000	3,000	
(5)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1)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0	3,000	3,000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2.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주) 1.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1.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전분으로 만든 이쑤시개 제외)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코팅(도포)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1.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5조제5항)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2,000	3,000	3,000		(1)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000	3,000	3,000		(2)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00	1,000	3,000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행				개정 (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신설)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1,000	3,000	
다.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3,000	3,000	3,000		다.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마.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	3,000	3,000	3,000		마.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	삭제	삭제	
마의2.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의 영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2,000	3,000	3,000		마의2~마의3 (삭제)				
마의3.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 억제	2,000	3,000	3,000		(1)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행				개정 (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2)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역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역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2,000	3,000
					(5)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별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	3,000	3,000	3,000	바. 삭제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		행			개정 (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 자제	3,000	3,000	3,000		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삭제	삭제	삭제	
					(1)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0	3,000	3,000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장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2,000	3,000	3,000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500	1,000	3,000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2.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별 제16조제2항)	500	700	1,000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1 차	2 차	3 차			1 차	2 차	3차 이후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가. ~ 나. 삭제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주) 현행과 같음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